

【 1 】 제2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

제의년월일 : 1994. 6. 20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제27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.

주요골자

회기 : 1994. 6. 22 ~ 6. 27 (7일간)

【 2 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

제의년월일 : 1994. 6. 20

제 의 자 : 의 장

주 문

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할 것을 결의함.

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선안, 우충국, 안광순, 한상익, 이은선, 김재현, 정명훈 의원 등 7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임.

【 3 】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

제출년월일 : 1994. 6. 13

제 출 자 : 양주군수